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 발의연월일: 2024. 05. 30.

발 의 자:김영배·민형배·김남희

김승원 · 오기형 · 전현희

고민정 · 강유정 · 복기왕

박정현 · 허종식 · 송기헌

김원이 · 염태영 · 주철현

김태년 • 홍기원 • 서삼석

박홍근 · 강훈식 · 김현정

이용선 • 박민규 • 박희승

박선원 • 이훈기 • 정진욱

강준현 · 김성회 · 김남근

정성호 • 이워택 • 유호중

채현일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당 및 시·도당"을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에 있어서 당해"를 "선거가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 중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를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지역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관할읍·면·동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중앙당 또는 시·도당"을 "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를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

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 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로,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대 표자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144조제1항 단서 중 "시·도당"을 "시·도당이나 지역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各號	
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	
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	
소를, 정당은 <u>중앙당 및 시·도</u>	<u>중앙당, 시·도</u>
<u>당</u> 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u>당 및 지역당</u>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치) ①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u>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치) ①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u>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치) ①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u> <u>당해</u>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치) ①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u>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치) ①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u>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	치) ① <u>선거가 실시되</u> 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 ⑦ (생 략)
-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第 (생 략)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
 -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마. (생 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 하는 당직자회의(구·시· 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 급 간부와 시·도수의 10 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읍·면·동단위 이상 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
1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ال حاما الم
<u>시·도당의 대</u>
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
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
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
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 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 파. (생 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 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u>시·</u> 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략)

2. 의례적 행위

가. (생략)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 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 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

	지역당의 대표자가 참석하
	는 당직자회의(관할 읍•
	면・동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u> </u>
, 1	 네 /린테리 키스)
	. ~ 파. (현행과 같음)
하	
	<u>시·도</u>
	당 또는 지역당
거	. (현행과 같음)
가	. (현행과 같음)
나	<u>중앙당,</u>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

2.

부를 포함한다)·그 배우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 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 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도당 <u>대표자를 포함한다)</u> 에게 연말·설·추석·창 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 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 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 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
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
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
근 간부를 포함한다)
대표자를 포함하며,
시 · 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시·도
당이나 지역당